

마르크스 정치이론의 형성과정 — 초기 저작(1842-1845)을 중심으로 —

최형익*

이 글은 마르크스 사상의 초기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마르크스의 사상형성에 있어 초기 저작의 지위는 전기와 후기의 대립이나 거꾸로 단순히 진화적 발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그 연속성은 무엇이며, 단절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연속과 단절 사이에 놓여진 이론적 긴장이 어떤 것인가를 마르크스사상의 유기적 구성, 특히 마르크스 사상의 최대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자본』파의 연관속에서 구체적으로 고찰될 때만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마르크스 초기저작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 권리와 노동이라는 두가지의 개념이 후기의 저작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1) '노동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인간 일반의 소외를 파악하려 한 초기의 입장을 버리고, 근대부르주아사회라는 역사 특수적인 사회에서의 노동의 지위 및 물질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적대를 파악하는 입장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2) 근대 부르주아사회에서의 물질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적대는 계급간의 '권리' 투쟁이라는 정치적 현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지닌 의미는 새로운 경제학을 구축한 것에 있지 않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독해를 행한 데에 있게 된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상임연구원. 전공분야는 정치이론-사상, 정치경제학, 정치사회학이며, 주요논문으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현대 독일 정치의 이해”, “칼마르크스의 정치이론”,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역서)등이 있다(연락처: 전화: 880-6343/6314, 018-228-4174, E-mail: cooler@hanmail.com).

1. 서론

마르크스의 사상형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소위 ‘인간주의’적 입장에 기반하여 《파리경제학-철학수고》 등 초기저작을 강조하는 ‘청년 마르크스(Young Marx)’의 입장과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정초한 《자본》 등의 저작을 강조하는 ‘후기 마르크스(Old Marx)’의 입장이 대별되어 서구 마르크스주의를 양분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일이다.¹⁾ 이러한 양분된 입장을 좀더 세분해서 들여다 보면 마르크스의 이론형성과정에 대해서, 특히 그의 초기 저작을 둘러싸고 크게 세가지의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첫번째는 과거 소련등 사회주의권의 공식적 입장으로서 마르크스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과정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개 마르크스의 사상이 “혁명적-민주주의적 입장으로부터 과학적인 철학적-공산주의적 세계관으로 발전”했다는 식의 단선적 형태의 진화적 발전과정을 취한다.²⁾ 두 번째는 마르크스 초기사상에 나타나는 휴머니즘적 요소를 마르크스사상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노동의 인간학을 통한 소외론을 마르크스사상의 핵심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서 대체로 서구의 비판적 마르크시즘이 이러한 생각을 대변한다.³⁾ 세 번째는 마르크스의 초기저작과 후기저작의 인식론적 단절을 강조하는 알뛰세등의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견해가 있다.⁴⁾

그러나 마르크스의 사상형성에 있어 초기 저작의 지위는 전기와 후기의 대립, 또는 단순히 진화적인 발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그 연속성은 무엇이며, 단절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연속과 단절사이에 놓여진 이론적 긴장을 규명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찰될 때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⁵⁾ 또한 위의 세 견해들의 경우

1) 마르크스의 사상에 대해서 초기저작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해석과 후기저작을 강조하는 과학적 해석의 관점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그러한 분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석용(1991) 참조.

2) T.I.Oizerman 1981), P.N.Fedoseyev(1989) 참조.

3) G.Lukacs, G.(1971), E.Fromm(1983) 참조.

4) ‘인식론적 단절’에 대한 알뛰세의 주장으로는 L.Althusser(1977: 227ff) 참조.

5) 마르크스의 초기이론형성과정과 관련하여 김세균은 초기 저작과 《자본》 등 ‘후기’ 저작들과의 ‘단

어떤 특정 저작만을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인양 특화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마르크스의 정치사상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는 〈라인신문〉에서의 정치활동등은 취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⁶⁾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초창기 저작을 다룬 연구들에 있어서 발생하는 두가지 문제점, 즉 “첫째는 마르크스가 초창기때 관념론자며 헤겔리안, 또는 철학자였다는 사실에는 대개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헤겔리안이라는 호칭이 갖는 특징에 대해 정확히 성격규정하거나, 또는 정의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다는 점, 둘째는 마르크스가 이러한 초창기의 입장으로부터 후기의 ‘성숙한’ 또는 ‘과학적인 입장’으로 전화했다는 사실에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론적 전환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이 없다”⁷⁾는 G. 티플의 언급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이 글은 마르크스 정치사상의 핵심을 적출(摘出)하기 위해 그 자신의 육성, 특히 그가 직접 기술한 개인적 연구사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사는 마르크스의 전 저작을 통틀어 오직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이하 〈서문〉)에만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자신에게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한 계기가 〈서문〉이 발간된 1859년보다 훨씬 전인 1842/43경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한다. 〈서문〉에서의 이러한 서술내용이 본고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중요한 것은 이처럼 마르크스 스스로 자신의 정치경제학 연구에 대한 동인이 이미 1842/43년 《라인신문》활동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언급한 사실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미 자신의 정치활동 초창기에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정확한 독해의 필요성을 체험했다. 요컨대, 1842/43년 〈라인신문〉의 활동은 그에게 이후 마르크스 정치사상의 전 범위를 규정지을 만한 주요한 동인을 한꺼번에 제기한 셈이다.⁸⁾

절’의 의미를 승인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단절’이 알뛰세가 말한 것처럼 그 이전의 이론발전과는 무관한 어떤 새로운 요소가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론형성과정의 다양한 방향들이 하나로 묶여져 그 이전의 이론적 경향들을 결론지음으로써 이를 토대로 문제제기가 새롭게 행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세균(1989: 51f) 참조.

6) 정문길(1984)은 마르크스가 〈라인신문〉을 통해 청년헤겔진영, 특히 바우어와의 차별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7) G. Teeple(1984: 5)

이 글은 1842년 〈라인신문〉에서의 활동을 통해 부디쳤던 정치경제학 연구에 대한 실제적 동인들, 다시말해서 이미 〈라인신문〉시절부터 소위 '물질적 이해관계'에 맞물린 문제들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치적 논의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이후의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사상형성과정에 있어서 〈라인신문〉에서의 활동과 같이 경제적 연구와 정치적 연구 사이의 마주침의 계기가 여러 번 존재하는데, 그러한 마주침이 소위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치적 독해'라는 통일된 관점으로 훗날 집약되는 대표적 저작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 사상의 전 범위와 발전의 궤적을 돌아볼 때, 이처럼 경제적 연구와 정치적 연구사이의 마주침을 통해 마르크스의 사상내에서 상당한 이론적 긴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정당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마르크스가 이론적 긴장을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 마르크스의 다양한 이론, 특히 경제이론과 정치이론이 서로 환원 혹은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어떤 유기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유기적 관련성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관련성이 발생한 주요한 이론적 계기는 무엇인가를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에 대한 면밀한 독해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1842/43년 〈라인신문 *Rheinische Zeitung*〉에서의 활동: ‘권리의 정치이론’ 형성을 위한 최초의 충격

마르크스는 1842년 2월 초에 쓰여진 〈최근의 프로이센 검열훈령에 대한 논평 (Comments on the Latest Prussian Censorship Instruction)〉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첫 정치활동을 개시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라인신문〉에의 기고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라인신문〉의 편집장일을 맡아보면서, 마르크스는 대략 24편의 글을 기고했는

8) 엥겔스는 훗날 마르크스가 〈라인신문〉에서 활동을 통해, 즉 삼립도별법과 모젤 농민들의 상태에 관한 문제들에 손을 대면서 단순한 정치적 관심에서 경제관계로 옮아가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로 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은 것으로 회상한다. P.N. Fedoseyev(1989: 62)에서 재인용.

데, 그 중 본 기사가 20편, 4편은 편집자 주(註)의 형식을 띠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주의회 의사록 공개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전개된 논쟁, 주의회내에서 도별에 관한 법령의 입법을 두고 각 신분-계급대표들간에 전개된 논쟁, 모젤지방의 포도재배농민과 주정부간의 분쟁 및 자유무역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 기사, 그리고 그밖에 이혼법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기사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타 신문들과 벌인 논쟁등이 주종을 이룬다. 이 가운데 본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언론자유를 비롯한 도별법 논쟁에서 민중들의 권익을 처음으로 대변하기 시작한 〈제6차 라인주의회 의사록-제1논설: 언론자유와 주(州) 신분의회 의사록의 공표에 대한 토론(Proceedings of the Sixth Rheine Province Assembly: First Article. Debates on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of the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the Estates)〉과 〈제6차 라인주의회 의사록-제3논설: 도별법에 관한 논쟁(Proceedings of the Sixth Rheine Province Assembly: Third Article Debates on the Law on Thefts of Wood)〉, 〈모젤지방통신원에 대한 변호(Justification of the Correspondent from the Mosel)〉 등의 글과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등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해 나가던 그러한 나라들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원시적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공산주의와 아우크스부르크 알제마이네 짜이퉁〉이라는 기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훗날 그의 사상형성에 끼친 정치적 충격의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1859년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이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 해야만 했으며, 이처럼 한마디 해야만 했던 상황이 자신의 경제학 연구의 첫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나중에야 이러한 발언의 기회가 경제학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회고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당시 〈라인신문〉에서의 마르크스의 논설은 일련의 대담한 정치적 발언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프로이센 검열당국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했고, 결국 〈라인신문〉에 대한 검열사태가 급기야 나중에 그를 공적 무대에서 퇴장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마르크스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전공은 법학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단지 철학 및 역사를 연구하는 외에 부차적 학과로서 연구하였을 뿐이다. 1842/43년에 처음으로 나는 〈라인신문〉의 편집자로서 이른바 물질적 이해에 대해 한 마디 해야만 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삼림도별과 토지 소유의 분할에 관한 라인주의회의 의사록, 그 당시 라인지방의 주지사였던 폰 샤퍼씨

가 모젤 지방 농민들의 상태에 대해 〈라인신문〉과 벌였던 공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무역과 보호관세에 대한 토론등이 내게 경제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최초의 동인을 제공하였다(CW29: 262).⁹⁾

그렇다면, 전공이 법학임에도 그것보다 오히려 철학 및 역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라인신문〉의 젊은 편집자 마르크스를 곤혹스럽게 했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마르크스는 ‘물질적 이해에 대해 한 마디’ 하기 전에 이미 〈라인신문〉에 기고한 몇 편의 기사로 프로이센 검열당국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둘입해 있었다. 그의 본격적인 기고활동은 1842년 5월 19일, 〈제6차 라인주의회의사록-제1 논설: 언론자유와 주 신분의회 의사록의 공표에 대한 토론〉에 관한 기사가 그 신문에 인쇄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기사에서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국가의 시대착오적 ‘검열훈령’에 대해 격렬히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야 말로 자유의 척도이며, 그 시대의 인민의 상태와 권리의 향유수준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가 언론의 자유라는 정치적 권리옹호를 자신의 정치활동의 제1성(第一聲)으로 터트렸다는 사실은 정치는 권리로 형상화된다라는 훗날의 권리정치이론에 일관되게 흐르는 문제의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설에서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가 신분제적 프로이센 국가의 권리, 사실상의 특권인 검열의 권리가 인민의 일반적, 보편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것임을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러한 “검열이라는 부자유가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다”(CW1: 145)라는 점, 그리고 진정한 검열의 자격이란 국가의 독단적, 행정적 개입이 아니라 오직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¹⁰⁾에 의해 공개적으로 다루어 질 때 획득될 수 있는 것임을 역설한다.

9)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마르크스 저작의 인용은 Marx, K. & Engels, F. Collected Works(=CW), Moscow: Progress Publishers의 것이며, 출전은 본문에 ‘권수: 쪽수’로 직접 표기한다.

10) “검열은 투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면적으로 만들며, 공개적인 투쟁을 은밀한 투쟁으로 전환시킬뿐 더러, 원칙들간의 투쟁을 힘없는 원칙과 원칙없는 힘과의 투쟁으로 변질시킨다. 언론 자유의 본질자체에 근거한 진정한 검열은 비판(criticism)이다. 비판은 자기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재판이다. 검열은 정부의 독점으로서 비판이다.”(CW1: 159)

신분의회 의사록의 공표(publication)는 그것이 ‘공적 사실’로 다루어 질 때, 다시 말하면 언론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진리가 된다(CWI: 136).

마르크스는 언론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자유일반의 상태이자 그 것의 본성으로 간주하며 그 일반적 원리가 “완전 공개”(CWI: 149)의 원칙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자유의 형식을 빌어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내용의 문제가 제기될 때, 이제는 단지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자유를 통해 어떤 정치적 입장, 정확히 누구의 권익을 옹호할 것인가가 보다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언론의 자유의 문제 역시 이제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판단의 차원에서 그 시험대에 오른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언론의 자유를 ‘망원경’에 비유한 다음과 같은 마르크스의 독특한 표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제6차 라인주의회의사록. 제1 논설 언론자유와 주 신분의회 의사록의 공표에 대한 토론〉에 실린 〈언론의 자유에 관한 첫 번째 논설〉에서 도시신분출신의 연사가 “만일 저 나라(프랑스를 가리킨다)에서 볼 수 있는 영원히 변화무쌍한 현실이나 불안스런 미래의 불확실성이 헌법 및 언론자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안다면, 그러한 헌법과 헌법자유에 대한 공감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 틀림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천문학자의 망원경이 끊임없는 천체의 운동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변화무쌍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나쁜 천문학 같으니라구!(CWI: 170)

바로 도별법과 토지분할 문제를 둘러싼 주의회의 논쟁은 마르크스에게 이제 단지 ‘망원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위에서 말한대로 소위 ‘변화무쌍한 현실’ 문제에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마르크스는 〈라인신문〉에 기고한 〈제6차 라인주의회의사록 제3논설: ‘도별법’에 관한 논쟁〉에서 처음으로 물질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이한 사회계급들간의 갈등이 권리투쟁으로 현상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를 목격한다. 여기서 갈등하는 권리의 내용이란 하나는 산림소유자들의 ‘영업권’이며 다른 하나는 도별자(盜伐者)인 빈한한 농민들의 ‘생존권’이다.

마르크스는 라인주의회가 도별꾼을 처벌하는 법령의 제정과정에 삼림소유자들의 탐욕과 사적 이기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도별법에 “목재절도”라는 표제가 붙게 되면 “살아있는 푸른 목재를 훔치는” 본래적 의미의 도별만이 아니라 “떨어진 나뭇가지를 좀도둑질하거나 또는 마른 목재를 주워 모으는 것 조차 절도라는 이름아래 포함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죄로 처벌”(CW1: 225)받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먼저 살아있는 푸른 나무의 도별과 나뭇가지를 주워모으는 것을 동시에 불법화하는 ‘도별법’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두 행위의 차이를 통해 지적한다.

마른 나뭇가지 주워모으기와 본래적 의미의 도별! 하나의 규정이 둘 모두에 공통된다. 타인의 목재를 자기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둘 다 모두 절도이다. 그 다음은 방금 법률들을 제정하였던 현명한 논리가 요약해 준다. 그러므로 우선 차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보자. 두 행위가 그 본질에 있어서 상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두 가지 행위가 법률적 견지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라나는 목재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재를 그것의 유기적 연관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켜야 한다. 이것이 나무에 대한 명백한 유린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나무소유주에 대해서도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 따라서 벌채된, 다시말해서 가공된 목재를 훔치는 사람은 재산을 훔치는 것이다. 그것에 반해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것에서는 아무 것도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소유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라 단지 소유물로부터 진작에 분리된 것일뿐이다 (……)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들을 무시하고 당신들은 그 양자를 절도라고 명명하고 양자를 절도로 처벌한다. 사실상, 당신들은 나뭇가지 주워모으기를 도별보다 더 중죄로 처벌한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뭇가지 주워모으기를 하나의 절도(theft)로 공언함으로써 이미 그것을 처벌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절도규정은 당신들이 도별 자체에 대해서 조차 공개적으로 내리지 않았던 처벌이다. 당신들은 도별을 목재살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살해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CW1: 226-227).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단순한 나뭇가지줍기’ 까지 절도죄로 처벌하는 그러한 ‘도별법’ 이야말로 삼림소유자의 극도의 탐욕과 사적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삼림소유자들은 ‘나뭇가지줍기’라는 도별행위(?)에 대한 단순배상에 더해 그것의 판매로부터 파생될 수익까지 계산하여 도별자인 빈

한한 농민들에게 4배, 6배 또는 8배의 벌금, 거기에다가 특별한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하고, 나아가 이들의 인신구속권까지 요구한다. 한마디로 삼림소유자에게 ‘도벌법’은 목재 뿐만 아니라 목재장사까지 보증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목재절도범은 삼림소유자에게서 목재를 훔쳤지만, 삼림소유자는 목재절도범을 이용하여 국가자체를 훔친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얼마나 진실인가를 동법 제19조(條)는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즉 사람들은 벌금을 요구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의 육체와 생명까지 요구한다. 제19조에 따르면 도벌자는 삼림소유자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삼림노동을 통해 완전히 삼림소유자의 수중에 놓이게 된다(*CWI*: 253).

단순가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삼림소유자에게 도벌자에 대한 사적 청구만을 부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따라서 그 청구의 실현을 위한 민사법정의 문이 그에게는 활짝 열려있다. 도벌자가 지불할 수 없다면 삼림소유자는 지불불능의 채무자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채무자에게 강제노역, 부역을 통한 봉사, 한마디로 일시적인 농노상태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삼림소유자에게 이와같은 요구권을 부여하는가? 그것은 벌금이다 (……) 삼림소유자는 벌금에 의해, 도벌자의 인신까지도 사취한다(*CWI*: 255).

결론적으로

삼림소유자의 의지는, 편의대로 그리고 자신의 성미에 가장 맞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도벌자를 마음대로 다룰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며, 이러한 의지는 국가가 범법자를 삼림소유자의 재량에 맡기기를 원한다. 그 의지는 전권을 요구한다(*CWI*: 244).

반면에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들, 라인주의회가 제정하려는 도벌법에 따르면 목재절도자로 분류되는 그러한 농민들의 목재채취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공동체의 권리이자 과거 역사를부터 농민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온 관습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채취한 목재가 농민들의 멜감, 즉 연료로 쓰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목재채취권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구성하는 정당한 관습적 요구였다. 독일내에서의 공동체와 그것의 관습적 권리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훗날 엥겔스의 마르

크공동체에 대한 연구로 더욱 구체화됨과 동시에 새로운 지반위에서 고찰되는데, 여기서 게르만 공동체인 마르크 구성원들인 농민들의 권리은 이러한 목재채취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풍부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권리를 “다양한 게르만의 권리들이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비옥한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는 빈민들의 관습권”으로서의 “인민적인 관습적 권리(popular customary rights)” (*CWI*: 235)로 규정한다.

우리들 비영리적인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대중을 위해서 (……) 관습권리들을 요구한다. 그것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관습권, 모든 나라에서 빈민의 관습권리인 그러한 관습적 권리들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관습권리는 오직 그 본성상 이러한 최하층의, 기층의 무산자 대중의 권리일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CWI*: 230).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마르크스가 자신의 정치활동 초창기부터 기층 민중의 권리를 응호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적 이해의 추구를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분 및 지주귀족의 이익과 대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권리정치이론의 맹아가 짹 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적 소유의 권리야 말로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태반에서 그 자체로 자라난 ‘실정적 권리(Real Rights)’임을 아직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를 어린 나무의 권리앞에 무릎꿇게” (*CWI*: 226) 만들고, “목재를 라인주민들의 물신” (*CWI*: 263)으로 만든 그러한 상황이란 라인주민의 특수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적 이해라는 특수이익에 의해 근대사회의 일반이익체인 국가가 조직되고 있음을, 따라서 사회가 그러한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음을 마르크스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문제설정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삼림소유자들의 무제한의 권리요구가 체화된 도별법이 “자기에게 중요한 단 하나, 즉 자기자신만을 잊지 않는” (*CWI*: 247) 사적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국가의 법적, 보편적 의지에 반하는 특수이해를 대변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삼림소유자들의 사적 이기심(利己心)을 “법의 원칙” 혹은 “국가이성” (*CWI*: 262)이라는 ‘보편이익’에 반하는 “천박한 유물론”이라고 부른다.

천박한 유물론, 즉 민중과 인류의 신성한 정신에 대항하는 이러한 죄악은 <프로이센 국가신문>이 입법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한 교의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즉 목재법에서는 목재와 삼림만을 생각하고 개개의 실질적 과제를 비정치적으로, 즉 온전한 국가 이성 및 국가윤리와 연관시키지 않고 해결하라고 설교하는 교의가 그것이다(CWI: 262).

그렇다면 주신분의회의원들은 마르크스가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주전체의 이익의 대변에 앞서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요구했던 것일까? 오히려 신분의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수이익의 대변이 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주의회의원들이 도별법을 빙민들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제정한 사태가 과연 그들의 “비뚤어진 양심과 이기심”의 소산인가? 마르크스가 훗날 1859년 [서문]에서 ‘자신을 곤혹스럽게 만든 문제’라고 언급한 일단에는 이러한 의문들이 내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가 이미 정치활동 초창기부터 자신의 정치적 삶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민중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그리고 분명히 명시하였고, 이러한 의지가 바로 <모젤지 방통신원에 대한 변호>에 나타나 있다.

주위의 주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난의 목소리를 직접 자주듣는 사람은 그것을 대단히 짚잖고 겸손한 비유들로 표현할 줄 아는 미학적 분별을 잊기가 쉽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은 아마도 그가 자신의 고향에서 한시도 잊을 날 없는 그 일반화된 고난의 소리를 어떤 기회에 공개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의무라고 까지 여길 것이다(CWI: 332).

<라인신문>의 편집에서 손 뗀 직후 루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중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저 몽매함속에서 희망을 품어 왔을 뿐이라 할지라도 여러 해 후에 언젠가는 돌연히 혁명하게 되어 그들의 경건한 소망을 실현할 것입니다(CW3: 134).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민중의 ‘경건한 소망’이란 “인간의 공동체, 즉 민주적 국가”를 의미한다.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고 공화주의자일 것입니다 (……) 인간의 자부심, 자유, 이것이 아마 이제 겨우 이들 인간의 가슴속에서 다시 일깨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이스인에 의해 세상에 나와, 기독교에 의해 천상의 어슴프레한 환영속에서 사라져 버린 바로 이 느낌만이 이 사회를 다시 인간의 최고목적을 위한 인간의 공동체, 즉 민주적 국가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CW3: 134).

마르크스가 자유언론을 통해 도별법과 토지분할문제로 야기된 모젤지방 포도재 배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이에 대한 주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민중들의 권익을 옹호하려 했을때 <라인신문>은 그 짧은 생을 마감하기에 이른다.¹¹⁾ 그러나 한편으로 마르크스는 이러한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투쟁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문제의 해결책을 ‘이성적 국가’나 ‘법의 정신’에 호소한다.¹²⁾ 마르크스는 아직도 이러한 사적 이해 일반을 국가가 대변하고 있고, 아니 정확히 이러한 사적 이해의 원리가 시대정신임을 그리고 헤겔이 이러한 사적 소유의 원리로 조직되는 보편이성으로서의 근대 부르주아국가의 청사진¹³⁾을 그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인신문>에서

11) <라인신문>의 폐간은 광범위한 항의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라인주에서는 이 조치의 철회를 얻어내기 위하여 프로이센 왕에게 보내는 청원서가 작성되었고, 웨른에서는 순식간에 천 명이 서명하였다. 마르크스가 그 신문에서 열정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모젤의 농민들도 청원서를 보내왔다. 그들은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라인신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당국을 비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문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의 처지, 우리의 행정이나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rier'sche Zeitung, 2 March, 1843, 1) P.N. Fedoseyev(1989: 60)에서 재인용.

12) 김세균(1989: 52f)은 마르크스가 <라인신문>에 활동하면서 부딪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국가/법과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르크스가 최초로 대변한 국가관이 헤겔의 국가관을 거의 이어받은 소위 “내적 중력형제”에 입각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파인(1995)은 헤겔의 이론적 기획이 근대적 ‘대의제 정부’ 비판을 통해 정치적 급진주의의 토대를 재구축한 것으로 간주하며, 마르크스의 『자본』이 정치경제학 비판의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처럼, 헤겔의 『법철학』은 정치학의 측면에서 부르주아 정치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의 활동이 마르크스에게 새로운 이론구성을 자극하는 지적 충격을 가한 것에는 틀림없지만, 이 당시의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문제설정, 즉 정치경제학의 비판과 권리의 정치이론이 결합되는 유기적 구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 역시 사실이다. 마르크스는 1859년 <서문>에서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마주침의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당시의 자신의 이론적 곤혹스러움의 일단을 앞에서 살펴본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해 발언해야만 했던 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더욱 더 나아가려는’ 선한 의지가 종종 전문지식을 대신했던 그 시기 예, 열은 철학적 색채를 띤 프랑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메아리를 <라인신문>에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미숙함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동시에 아우크스부르크 <알게마이네 짜이퉁>과의 어떤 논쟁에서, 나의 당시까지로의 연구로는 그 프랑스 사조들의 내용자체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감히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였다. 오히려 나는, 신문의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문에 내려진 사형선고를 칠회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라인신문> 경영자들의 환상을 기꺼이 이용하여 공개적인 무대로부터 서재로 물러 앉았다(CW29: 262).

위에서 언급된 “어떤 논쟁”이란 마르크스가 1842년 10월에 <라인신문>에 쓴 <공산주의와 아우크스부르크 알게마이네짜이퉁(Communism and the Augsburg Allgemeine Zeitung)>이라는 기사를 말한다. 이 논쟁은 <서문>에서 마르크스가 밝힌대로 소위 ‘열은 철학적 색채를 띤 프랑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메아리’를 담고있는 바이틀링의 소위 ‘베를린의 가족의 집’에 관한 한편의 공산주의적 논설을 마르크스가 <라인신문> 문예오락란에 게재하고, 여기에 “이 시대에 중요한 문제의 역사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논평을 붙인 것에 대해 <아우크스부르크 알게마이네 짜이퉁>지(紙)가 “이러한 씻지않은 더러운 재료를 추천의 말을 부쳐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CW1: 215)고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촉발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유럽의 공산주의 사조에 대해 “하나의 독단적 추상”(CW3: 142)이라고

13) 근대적 국가를 포함하는 부르주아 사회전체의 실정성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이해가 헤겔《법철학》의 주된 구상이다. 헤겔의 시민사회와 근대부르주아 국가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한 논의로는 M. Riedel(1983), S. Avineri(1983) 참조.

말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취했지만, 그러한 사조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 봤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알제마이네 짜이퉁>과의 논쟁에서 공산주의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시사문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오늘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신분이 중간계급의 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슈트라스부르그의 연설 없이도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신문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멘체스터, 파리, 리옹의 길거리의 누구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CW1: 216).

마르크스가 유럽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유독 파리, 멘체스터, 리옹 세 도시를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멘체스터는 당시에 영국 노동자 정치조직인 채아티스트 운동의 중심지에 속했고 파리와 리옹은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 대륙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유럽인들이 1831년과 1834년에 있었던 리옹견직공들의 봉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자신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운동이 공산주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운동이 앞에서 말했던 물질적 운동과 관계된 것임을 어렵잖하게 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로 하여금 헤겔의 법철학과 1793년 프랑스 혁명헌법에서 드러난 부르주아적 정치체제와 부르주아적 권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함께, 정치경제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게 했다. 이처럼 독일 고전철학의 지적 전통에서는 과악할 수 없는 초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마르크스는 “공개적인 무대로부터 서재로” 기꺼이 물러 앉았다.¹⁴⁾

14) 마르크스는 1843년 1월 25일자 <아놀드 루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같은 해 4월 1일로 예정된 <라인신문>의 폐간을 앞두고 사임을 결심하면서 이 신문 편집국장으로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귀하는 겸열지침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당초부터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결과를 목격할 뿐입니다. <라인신문>의 폐간을 정치적 의식의 명백한 진전이라고 보기에 나는 사임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나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질식할 지경입니다. 자유를 위해 노예와 같이 일해야 하고 몽둥이 대신 바늘로 찌르는 성가신 일(pinprick)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위선과 어리석음, 지긋지긋한 전횡, 그리고 우리들의 굴욕, 나아가 문장을 깍고 굴리고 다지는데 질력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는 나에게 나의 자유를 되돌려 준 셈입니다.” (CW1: 397)

3. 근대국가 및 부르주아적 권리체계 비판: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On the Jewish Question)(1844)를 중심으로>

<라인신문>을 그만둔 후 마르크스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화적 도시라 할 수 있는 파리로 이주했는데, 바로 이 시기의 파리에서의 삶은 그의 정치적 사유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파리에서의 그의 정치활동은 『독불연보(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와 <전진(Vorwärts!)>이라는 저널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파리에서의 그의 활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동안 주요한 이론적 친구들이었던 헤겔좌파의 두 중심인물인 부르노 바우어와 아놀드 루게등과의 정치적 결별이다. 이들과의 결별은 정치적 입장상의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러한 균열이란 바로 근대국가와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대립으로 정식화하는데, 이 글은 이 가운데 마르크스가 이해하는 소위 ‘정치적인 것’의 문제설정이 <라인신문> 시기와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라인신문> 시기의 마르크스에게 정치적 문제의 핵심은 독일의 정치현실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이센 국왕제를 여타의 유럽국가들의 정상적 발전에서 일탈된 예외적 세계로 간주한다. 마르크스는 나아가 한편으로는 이러한 프로이센 국왕제의 불합리성을 ‘관료제’ 비판과 연결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비합리성을 치유할 대안으로서, 즉 이러한 프로이센 국왕제에 민주공화제의 기운을 불어 넣어줄 요소를 “자유언론”的 존재에서 찾는다.

그러므로 통치자와 피치자는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제3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관청의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potitical)인 것이며, 따라서 관료제적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와 그 필요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채 시민적인 그러한 요소이다. 공민(a citizen of the state)의 머리와 시민(a citizen)의 심장을 각각 보완하여 그들을 완결시키는 이러한 요소는 자유언론이다. 언론의 영역에서는 행정과 피치자가 각각 상대방의 원칙과 요구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비판은 더 이상 종속적 관계속에서가 아니라 공민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더 이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지적인 힘으로서, 즉 오성적 근거로서 행해지는 비판인 것이다(CW1: 349).

이와같이 마르크스는 근대적 민주공화제의 핵심을 “자유언론”의 존재에서 찾고 있다. 앞 절의 ‘도별법 논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이센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사적 이익과 보편적 이익간의 대립의 관점, 즉 사적 이익을 신분제적 특권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특권에 의해 프로이센 국가가 조직되었기에 프로이센 군주제는 보편이성과 보편적 권리가 실현되는 공화제적 이상에 반하는 정치적 형식으로 설정된다. 이와달리,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민주주의적 공화제로 국가의 보편이성이 실현된 것으로, 따라서 프로이센이 따라야 할 전범으로 자리매김된다.

속물의 세계는 정치적 동물세계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동물세계의 존재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겐 현상태를 단순히 옳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야만적인 수 세기가 정치적 동물세계를 탄생시켜 길러내었고, 이제 그것은 탈 인간적 세계를 원리로 하는 수미일관된 체계로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속물세계인 우리 독일은 인간을 회복시킨 프랑스 혁명의 저 뒤편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 그는 자신의 심중과 기분이 곧 프로이센 영토의, 즉 자기 국가의 기본법임을 천명했습니다. 사실 프로이센에서는 왕이 곧 체계입니다. 그는 유일한 정치적 인물이며 그의 인성이 체계를 이렇게 저렇게 결정합니다(CW3: 137; 139).

그러나 1843-44년의 파리생활은 마르크스에게 이러한 환상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제 마르크스의 정치비판의 예봉은 공화제도 그 자체, 정확히 부르주아적 공화제라는 국가형태가 지닌 모순에 겪누어지게 되며,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는 바로 이러한 정치비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마르크스의 부르주아 공화제도의 비판이 권리담론을 통한 비판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이다.

마르크스는 먼저 부르주아 정치혁명에 의해 조성된 근대사회의 모순, 즉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민과 시민사회의 성원으로서 사인간의 분열

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 ‘분열’을 근대사회의 이른바 ‘정치적 해방의 완성’으로 표현한다.

물론 정치적 해방이 하나의 위대한 진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일반의 최종적 형태인 것이 아니라 종래의 세계질서 내부에서의 인간해방의 최종적 형태일 따름이다 (……) 인간이 공적 인간(public man)과 사적 인간(private man)으로 분열되는 현상, 종교가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시민사회로 전치되는 현상, 이것은 정치적 해방의 한단계가 아니라 완성이다. 따라서 정치적 해방은 인간의 현실적 종교성을 철폐하지도 않거니와 철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인간이 유태인과 공민으로, 청교도와 공민으로, 종교적 인간과 공민으로 분해되는 현상, 이것은 공민권에 맞서는 기만도 아니요 정치적 해방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해방 그 자체(potitical emancipation itself)이며, 그것이 종교로부터의 해방의 정치적 방식인 것이다(CW3: 155).

마르크스는 ‘정치적 해방’을 부르주아 혁명의 소산인 정치적 공민권의 실현이라 는 관점에서 다루며, 동시에 근대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의 제 권리가 어째서 ‘인권(droits de homme)’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형태로 불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인권(*droits de homme; rights of man*)은 그 자체로서 공민권(*droits du citoyen; rights of citizen*)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무슨 근거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간’ 그 자체이며, 무순 이유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불리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국가의 관계, 정치적 해방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CW3: 162).

마르크스는 정치적 공화제를 ‘자유’, ‘평등’, ‘소유’, ‘안전’을 불가침의 천부인권으로 선언한 1793년 프랑스 혁명헌법을 통해서 고찰한다. 대표적 예로 자유와 소유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르크스는 동 헌법 제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의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한

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자유란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즉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점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유라는 인권의 실천적 적용이 바로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라는 인권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의 근간은 무엇인가?

제16조(1793년 헌법): “사적 소유의 권리은 각자의 재화와 수입, 각자의 노동과 근면의 과실을 자기 의지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사적 소유라는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는 일체 단절한 가운데 사회와도 무관하게 자신이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만의 이용의 권리이다. 앞서의 개인적 자유와 함께 그 자유의 이러한 유용이 시민사회의 기반을 형성한다. 시민사회에서 만인은 타인에게서 자신의 자유의 실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 제약을 발견한다(CW3: 163).

마르크스는 인간의 해방을 의도한 정치적 혁명이 해방은 커녕 오히려 “공민권(citizenship)과 정치적 공동체가 정치적 해방으로부터 소위 인권이라는 것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민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적 시민(bourgeois)으로서의 인간이 본연의 참된 인간으로 간주”(CW3: 164)되는 역설을 하나의 “수수께끼(puzzle)”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수수께끼”를 부르주아적 정치혁명이 외표화하는 모순과 한계, 즉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대립을 통해 풀어간다.

정치적 혁명은 시민社会의 정치적 성격도 철폐시켰다. 정치적 혁명은 시민사회를 그것의 단순한 구성요소들로 분해시켰다. 즉 시민사회를 한편으로는 개인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개인들의 삶의 내용, 시민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로 분해시켰다 (……) 정치적 국가의 구성과 시민사회가 독립적 개인들로 해체된 것은 하나의 동일한 행동속에서 완수되었다. 시민社会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 곧 비정치적 인간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자연적 인간으로 나타난다. 인권은 자연권(droits naturels)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식적 활동(conscious activity)은 정치적 행위(political act)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기적 인간은 해체된 사회의 수동적 결과내지 그 져 주어져 있는 결과요, 직접적 확실성의 대상이요, 따라서 자연적 대상이다. 정치적 혁명은 시민적 형태의 사회적 삶을 그 구성요소로 해체시켰으나 그 구성요소 자체를 혁명화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했다. 정치적 혁명은 자신의 존립의 기반, 더 이상

근거지워질 수 없는 전제, 따라서 자신의 자연적 기초를 대하듯이 시민사회 즉 욕구, 노동, 사적 이익, 사적 권리의 세계를 대한다(*CW3*: 166-167).

부르주아적 권리인 소위 '인권'이 인간의 합자연적 존재형태라는 식의, 인권이 실정적 권리(혹은 실정법)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사회일반의 보편적 지위를 참칭하는 사태에 착목한 마르크스는 향후 전개될 근대정치의 지형이 계급적 특수이익을 사회적 일반의 권리 혹은 일반적인 사회권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투쟁에 다름 아님을 예시한다.

이 부분적이고 단지 정치적일 뿐인 혁명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시민사회의 한 부분이 자신을 해방시키고 일반적인 지배에 도달하는 데에, 말하자면 한 특정계급이 자신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사회의 일반적인 해방을 기도하는데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계급은 다음의 전제하에서만 사회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다. 즉 사회전체가 이 계급의 상황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예컨대 화폐와 교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어떠한 계급도 자기 자신 및 대중속에서 열정의 계기를 불러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열정의 계기란 그 속에서 한 계급이 사회와 일반적으로 화합하고 융화하며, 사회와 혼동되고, 사회의 일반적 대표자로서 느껴지고 인정받는 그런 계기, 따라서 그 속에서 그 계급의 요구와 권리들이 진정으로 사회자체의 요구와 권리가 되고 그리하여 그 계급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머리요 사회의 심장이 되는 그러한 계기이다. 사회의 일반적인 권리(the general rights of society)라는 명분속에서만 하나의 특정한 계급은 일반적인 지배를 주장할 수 있다(*CW3*: 184).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 등의 저작을 통해 마르크스는 근대사회가 정치-경제-사회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회영역의 분리와 그것이 지닌 고유의 원리라는 관점을 통해서는 근대사회내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메카니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대사회내부에서 작동하는 정치원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차, '정치적인 것'의 내용이 '사회적인 것'으로의 의미확장을 통해 새롭게 재규정될 것이 요청된다. 이는 다시, 마르크스가 이해하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확장되는 단초로서 마르크스 자신의 정치적 관심내에 사회적인 것, 특히 시민사회구성과 그 운동양식을 어떻게 포괄

해 낼 것인가의 문제로 정식화된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파리시절’부터 근대사회 의 운동양식이라 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그 러한 이론적 고민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4. 근대정치경제학과의 마주침: 《1844년 경제학-철학수고》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라인신문〉에서의 언론을 통한 정치활동의 경험과 그리고 파리에서 체류는 마르크스를 근대적 시민사회의 이해라는 형태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했다. 《1844년 경제학-철학수고》의 ‘서문’이 보여주듯 애초 마르크스는 헤겔에 대한 포괄적 비판을 자신의 연구계획의 맨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기획은 전환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전환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헤겔의 국법철학 비판’라는 형식으로는 결코 헤겔을 실제로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였으며, 이는 반대로 《헤겔법철학비판》이 지닌 한계성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그의 《헤겔법철학 비판》라는 본문보다 책의 서설이 늦게 저술되고, 그리고 〈헤겔 법철학 비판서설〉만이 《독불연보》에 실린 사정을 반영한다. 1842년 3월 5일 《루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헤겔의 법 개념과 “내적인 정치체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기사의 주요방향을 “핵심은 입헌군주제와의 투쟁”(CW1: 382)이라는 문구로 압축했다. 그 기사는 보존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정말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헤겔법철학비판》이 이 기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점은 마르크스가 헤겔의 《법철학》을 다루면서 한정된 헤겔의 정치이론 부분, 제3부 3장 ‘국가’의 일부(§257-§313)만을 한정하여 고찰 대상으로 삼을 뿐, 정작 마르크스 스스로 “오히려 헤겔이 18세기의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선례를 따라 ‘시민사회’라는 이름아래 그 총체를 총괄하고 있는 물질적 생활관계들에 뿌리박고 있다는”(CW29: 262) 헤겔의 사실상의 소유권 및 경제이론, 즉 헤겔의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파악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는 3부 2장 ‘시민사회’나 1부 추상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늦게 나온 〈헤겔법철학비판 서문〉은 본문과 내용상에 있어서 유기적 관련성을 갖

고 있지 않으며, 1859년 〈서문〉의 경우에서 조차 마르크스는 자신이 헤겔에게서 얻었다고 하는 교훈을 그의 《법철학 비판》의 본문과는 전혀 다른 각도, 즉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¹⁵⁾

결국 이 시기의 마르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 마르크스가 사변적 비판을 주요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던 이전의 태도에서, 혹은 독일고전철학의 영향권내에서 이탈하여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르크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 첫째는 헤겔에 대한 새로운 파악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년 헤겔 학파는 물론 그 스스로 철학사의 거대한 혁명과 시대적 전환을 갖고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 즉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연구 초기에 1859년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일단 획득되자 내 연구의 길잡이’가 된 주요한 두 가지 개념을 끄집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노동’과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새로운 문제설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글은 먼저 마르크스의 이 당시의 주된 연구방향이 정치경제학에 대한 철학적 파악, 소위 ‘노동의 인간학’에 정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에 대한 인간학적 파악은 포이에르 바하적인 자연철학적 유물론에 상당히 경도된 것이며 이는 1844년 《경철수고》내부에서 조차 중대한 이론적 긴장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이론적 긴장을 극복하는 방향은 ‘노동의 인간학적 문제설정’으로부터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문제설정으로의 방향전환이었다. 이러한 방향전환이야말로 그가 헤겔에 의존하면서도 헤겔을 넘어서는 계기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그의 철학적, 정치적 신조의 표제가 어째서 ‘헤겔에 관한 테제’가 아니라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테제’인가도 아울러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철수고》¹⁶⁾에서 자신의 연구가 아담 스미스 등으로

15) “나를 염습했던 의문의 해결을 위하여 시도된 첫 번째 작업은 헤겔의 법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는데, 그것의 서설은 1844년 파리에서 발행된 《독불연보》에 실렸다. 나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 즉 법관계들과 국가형태들은 그것들 자체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헤겔이 18세기의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선례를 따라 ‘시민사회’라는 이름아래 그 총체를 총괄하고 있는 물질적 생활관계들에 뿌리박고 있다는, 그러나 시민사회와 해부학은 정치경제학에서 찾아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CW29: 262)

16) 《경철수고》의 출간이후 마르크스 초기사상을 둘러싸고 전개된 유럽의 논쟁에 대한 소개로는 T.I.

대표되는 국민경제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포이에르바하로 인해 “실증적 비판, 곧 국민경제학에 대한 독일에서의 실증적 비판과 그 비판의 진정한 근거설정이 가능해 졌다”(CW3: 232)라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연구가 올바른 양심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경철수고》가 마르크스의 학문적 양심에 입각해 있고, 동시에 출판을 전제로 한 논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이론적 긴장과 모순을 내재하고 있는 저작임에 틀림없다. 사실상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것이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의 사상형성과 관련된 논쟁의 대부분은 바로 《경철수고》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경철수고》는 여전히 논쟁적인 저작이다. 이 글은 《경철수고》 그 자체에 내재한 이론적 모순을 ‘노동에 대한 인간학적 문제설정’과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문제설정’ 간의 대립, 혹은 이론적 긴장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여전히 전자의 지평에 머무르는 한 그가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서문〉에서 ‘이전의 철학적 양심’이라고 밝힌 포이에르바하적인 ‘인간학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 사회관’의 틀 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¹⁷⁾

마르크스는 첫 번째 초고에서 아담스미스, 리카아도등 국민경제학자들의 노동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비록 정치경제학자들이 그들 스스로 다음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현재의 조건하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의 목적이 단지 부의 증가에만 제약되어 있다면 노동 그 자체는 해롭고 파괴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CW3: 240).

여기서 “해롭고 파괴적”이라고 말한 노동에 대한 규정은 다시 ‘소외된 노동’으로 정식화 된다. 소외된 노동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생산물로 부터의 소외이지

Oizerman(1981: 265-282) 참조.

17) 이와달리 《경철수고》에서 표출된 마르크스의 노동의 인간학과 노동의 소외관을 마르크스 사상의 정수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인간주의적 해석으로는 E. Fromm(1983), H. Popitz(1983) 참조.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관을 자연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글로는 W. Schmied-Kowarzik(1992) 참조.

만, 이는 무엇보다 노동활동 그 자체내에서의 소외의 귀결이다.

그러나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의 행위에서도, 즉 생산활동 자체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만약 노동자가 생산행위자체속에서 자기로부터 자기자신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활동의 생산물과 낯설게 대립할 수 있게 되겠는가? 생산물은 확실히 활동의, 생산의 요약일 뿐이다 (……) 노동대상의 소외속에는 단지 노동활동 자체속에서의 소외, 외화가 요약되어 있을 뿐이다(CW3: 274).

한편 이러한 노동의 소외론으로부터 노동활동이 갖는 본래적 의미는 인간의 유적 본질이라는 식의 노동의 인간학으로의 주제전환이 이루어진다.

인간에게서 1) 자연을 소외시키고 2) 그 자신을, 즉 그의 고유한 능동적 기능, 그의 생활활동을 소외시킴으로써,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유를 소외시킨다 (……) 그러나 생산적 생활은 유적 생활이다. 그것은 생활을 산출하는 생활이다. 그것은 생명-산출의 삶이다. 생명활동의 방식속에 어떤 종의 성격 전체, 그 종의 유적 성격이 놓여 있으며,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이 인간의 유적 성격이다. 생활 그 자체는 오직 생활수단으로서만 현전한다(CW3: 276).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다름아닌 대상적 세계의 가공속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신을 유적 존재로 증명한다. 이 생산은 그의 활동적인 유적 생활이다. 이 생산에 의하여 자연은 인간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현실로서 나타난다. 노동의 대상은 인간의 유적 생활의 대상화이다 (……)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의 생산의 대상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유적 생활, 즉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빼앗고, 동물에 대한 그의 장점을 단점으로 그의 비유기적 몸, 즉 자연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외된 노동은 자기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수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CW3: 277).

마르크스는 대상적 세계의 가공이라는 노동활동속에서 자신을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식의 자기활동이라는 노동의 긍정성과 그러한 장점을 모두 빼앗긴채 강제노

동으로 변질된 소외된 노동¹⁸⁾이라는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다른 측면이라는 규정을 두고 혼란에 빠진다. 나아가 이러한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산물이라는 규정으로부터 그렇다면 소외된 노동은 어째서 발생하는 가의 문제를 두고 동어반복 형태의 순환논법에 빠진다.

사적 소유란 외화된 노동, 자연과 자기자신에 대한 노동자의 외적인 관계의 생산물, 결과,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는 외화된 노동, 즉 외화된 인간, 소외된 노동, 소외된 생활, 소외된 인간개념의 분석에 의해 생겨난다. 우리는 물론 소외된 노동(외화된 생활)의 개념을 사적 소유의 운동으로부터의 결과로서,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근거, 원인으로 나타날 때에, 사적 소유란 오히려 소외된 노동의 귀결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데, 이것은 신들이 본래 인간지성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과 마찬 가지이다. 이 관계가 뒤에 가서는 상호작용으로 바뀐다(CW3: 279-280).

이러한 논법은 사적 소유가 소외된 노동의 원인일 때는 사적소유는 소외된 노동의 결과가 되고, 소외된 노동이 사적 소유의 원인일 때는 소외된 노동이 사적 소유의 결과라는 그야말로 구름과 비의 관계에 불과한 동어반복이다. 구름과 비의 관계는 구름은 비의 원인(이때 비는 구름의 결과이다)이고, 다시 입장이 바뀌면 비가 구름의 원인이 되어 결국 비가 구름이다라는 증명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과 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와 구름은 동일물의 타재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 뿐이다.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 철학의 사정권내에 있는 한 이러한 순환논법의 모순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지만, 마르크스는 그러한 논법의 부조리에 대해서 짐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그는 두 번째 초고에서 “문명화된 세계에서 자본이 이룩한 승

18) “노동소외의 본질은 어디있는가? 첫째 노동이 노동자에게 외적이며, 즉 그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노동자는 그의 노동속에서 자신을 궁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에 있다 (……) 그의 노동은 그러므로 자발적(voluntary)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 강제노동(forced labour)이다. 그 노동은 어떤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그의 노동바깥에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CW3: 274)

리는 죽은 물질대신에 부의 원천으로서의 인간의 노동을 발견하고 또 이를 창조하였다는 것” (*CW3*: 188)이라고 언급했다. 그후 ‘사적 소유와 노동’이라는 표제로 시작되는 세 번째 초고부터는 ‘노동의 소외’ 혹은 ‘소외된 노동’이라는 언급 대신, 주요한 논거를 펼칠 때 사용되는 개념은 ‘소외된 노동’이 아니라 일반적 형태의 노동이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가 노동활동 일반의 산출물, 나아가 노동일반이 사적 소유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초고의 서두에서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의 주체적 본질, 즉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으로서, 주체로서, 인격으로서의 사적 소유는 노동” (*CW3*: 290)이라고 정의한 후, 사실상 첫 번째 초고의 연구결과를 뒤엎는다.¹⁹⁾

프루동이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의 운동이라고 파악한 모든 것이 (사실은) 자본의 규정속에 있는 노동의 운동, 자본으로서, 즉 산업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자본에 대항하는 산업적 자본의 규정속에 있는 노동의 운동일 뿐이다. 보다시피, 노동이 사적 소유의 본질로서 파악되어야 비로소 국민경제(학)적 운동자체도 그 현실적 규정성속에서 통찰될 수 있다(*CW3*: 317).

《경철수고》를 통해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이외에도,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소외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독자적인 형태의 소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활동의 중심항, 즉 노동소외라는 규정, 즉 노동의 인간학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첫 번째 초고에서는 명시적으로 노동활동을 인간 유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실천으로, 중심범주로, 따라서 노동의 소외가 여타의 다른 사회적, 인간적 소외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철수고》에서 표현된 인간소외의 내용을 노동소외와 함께 “욕구충족 행위의 자율성과 사회성, 미적 욕구의 능력”²⁰⁾으로부터의 소외로 병렬적으로

19) MEGA판(版) 편자 역시 세 번째 노트 1부를 다음과 같이 축약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사적 소유의 주체적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부르주아 경제학의 역사에서 노동에 관한 견해가 사적 소유의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필연적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과 사적 소유의 완성된 객체적 형태가 산업자본이고 공장노동이 노동의 완성된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K. Marx(1991: 32-33)

20) D. Conway(1987: 31f)

파악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 각종 ‘소외’ 현상을 단지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철수고》에서 표현된 “인간적 본질을 왜곡하는 사회적 기제, 혹은 역사적 조건으로서의 자본주의, 즉 ‘소외’의 객관적인 조건에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가 사적 유물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 유물론으로의 이행을 예고한다”²¹⁾는 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을 ‘노동의 인간학’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 발리바르와 하버마스의 오류를 반복하는 셈이다.²²⁾

강조컨대, 《경철수고》는 그 내부에서 모순된 형태의, 달리 표현하면 이론적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작이다. 마르크스는 자기활동이라는 노동의 긍정성과 노동의 소외라는 노동의 부정성을 구분하는 첫 번째 초고의 ‘노동에 대한 인간학적 규정’을 벗어나 세 번째 초고에서는 노동활동일반이야말로 사적 소유의 본질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사적 소유의 가장 발전된 형식으로서의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실정적 성립이란 노동활동일반, 즉 노동분업과 교환의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중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인식전환의 일반화가 추상적 형태이긴 하지만 바로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5. ‘노동’과 ‘실천’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Theses on Feuerbach)〉(1845)

〈포이에르 바하에 관한 테제〉(이하 〈테제〉)는 한마디로 마르크스의 이론적 방향 전환을 응집해서 보여주는 문서이다. 정식화하면, 〈테제〉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소외되는가라는 실제로는 관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설정으로부터 현존하는 세계 자체가 인간실천활동의 결과라는 소위 ‘실정성’에 대한 파악으로 문제설정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현전하는 근대부르주아 사회의 실정성의 문제, 다시말해서 그것의 역사특수적 지위를 어떠한 입장에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제기의 형식을 취하는 〈테제〉를 통해 비로소 마르크스는 상이한 경로에서긴 하지만 헤겔이 《예나실재철학(‘예나에서의 철학강의’)》 이후

21) 이러한 주장으로는 진석용(1991: 31ff) 참조. 진석용의 주장은 《경철수고》가 인본주의에서 과학주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였다는 오이저만(1981: 265)의 관점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22) 발리바르와 하버마스의 논의로는 E. Balibar(1991), J. Habermas(1979) 참조.

『정신현상학』 단계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동일한 지반에 서게 됐다.²³⁾ 〈테제〉의 의의란 형식적으로는 포이에르바하를 겨냥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헤겔의 ‘노동철학’을 넘어서는 내적 계기라는 데 있다.²⁴⁾

〈테제〉 분석에 들어 가기에 앞서 《경철수고》 세 번째 노트의 마지막 부분이 〈테제〉로 나아가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본고의 가설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경철수고》의 마지막 노트가 1844년 8월경에 쓰여지고 〈테제〉가 1845년 봄에 쓰여졌다면 이는 연대기적으로도 상당히 근거있는 추론이다. 또한 《경철수고》 세 번째 노트의 한 부분인 ‘헤겔의 변증법 및 헤겔철학일반에 대한 비판’에서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에 바쳤던 찬양과 현사에 비한다면 불과 수개월 뒤에 자신의 철학적 지주를 정면으로 그것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테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미 《경철수고》 자체가 연속적이고 일관된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혼돈되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한 다양한 의식의 표출로, 다시말해서 그 자체로 이론적 긴장이 형성되어 있는 저작으로 봐야 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긴장과 다양한 의식의 일단을 세 번째 노트 마지막 부분, 즉 마르크스가 훗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스케치적 서술들이라는 의미에서 ‘추가글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업과 교환이 사적 소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노동이 사적 소유의 본질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는데, 이것은 국민경제학자가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이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증명하려는 주장이다. 분업과 교환이 사적 소유의 형상들이라는 바로 이 사실속에 인간적 생활이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 사적 소유를 필요로 했고 또한 다른 한

23) 헤겔에게 있어서 근대사회의 실정성에 대한 파악이 지닌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는 G. Lukacs(1986: 127ff) 참조.

24) 이러한 본고의 주장과는 달리 아더는 마르크스가 헤겔과 《경철수고》를 통해 결별했지만, 〈테제〉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는(mediating) 활동으로서의 ‘사회적 노동’의 발견을 통해 오히려 헤겔과의 친화성을 복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C.J. Arther(1986: 110ff) 참조. 그러나 사회적 노동이 인간의 사회적 활동성의 중심이라는 식의 노동철학적 입장은 헤겔에게 고유한 것이지 마르크스의 핵심적 주장은 아니다. 헤겔에게 있어서 노동규정은 대상과 주체의 매개이자 중심항이며, 이러한 식의 노동규정은 결국 추상적 노동, 즉 가치의 형태를 띠는 보편성으로 현상한다. 헤겔의 사회철학내에서 매개규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M.O. Hardimon(1994) 참조. 그리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헤겔의 사회적 ‘노동철학’의 관점에서 독해하고 있는 저작으로는 임석진(1990) 참조.

편으로 이제는 인간의 삶(human life)이 사적 소유의 지양을 필요로 한다는 이중의 설명이 놓여있다(CW3: 321).

마지막 구절, 즉 “인간적 생활이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 사적 소유를 필요로 했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인간의 삶이 사적 소유의 지양을 필요로 한다는 이중의 설명”이라는 언급이 중요한데, 이는 《경철수고》첫 번째 노트에서 표출된 노동의 인간학적 문제설정의 설명방식인 노동소외론의 형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자, 즉 사적 소유가 인간적 생활이 자신을 실현할 필요에 의해서 발생됐다라는 얘기는 사적 소유가 인간생활의 특수한 하나의 대상적 실천형식으로서의 노동활동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 즉 이제는 인간적 삶이 사적 소유의 지양을 필요로 한다는 언급은 정확히 물질적 생산활동인 노동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괄하는 사회적 감성적 실천일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이 사적소유와 연관된, 그리고 그것을 형성케한 본질이라면, 어떻게 다시 노동이 사적 소유²⁵⁾를 지양할 실천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는가.

결국 사적 소유의 지양은 근대사회가 노동활동을 해방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적 삶 일반, 실천활동을 해방시키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²⁶⁾ 이는 결국 부르주아사회의 은밀한 기반이 노동활동을 특정화하는 노동의 인간학으로부터 노동활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 삶의 조직방식을 실천적 활동이라는 일반적 형식으로 포괄하려는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생산활동인 노동과 여타의 사회적 실천활동의 관계라는 문제설정으로 전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²⁷⁾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테제〉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문제전형이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를 한 단어 즉 “주체

25) 소유문제에 대한 경제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 소유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 역사내에서 소유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글로는 M. Brie(1990) 참조.

26) 마샬은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토니의 말을 빌려 이러한 자유노동의 성립이야말로 근대사회를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노동할 권리가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T.H. Marshall(1992: 10ff) 참조.

27) 마르크스의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테제〉에 기술된 감성적, 대상적 실천을 노동으로 한정짓는 것은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는 해석이다. 〈테제〉는 《경철수고》에서 표현된 ‘노동의 인간학’과 유적존재로서의 인간관에 대한 자기비판과 그러한 관점의 전복, 즉 인간의 사회적 실천활동일반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근대적 노동을 투사하는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적(subjective)”이라는 용어로 정확히 표현한다.²⁸⁾

세계의 대상성이 주체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문제설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르크스는 자신의 노동이론을 새롭게 주제화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나중에 『철학의 빈곤』과 흔히 ‘그룬드리세’라고 알려진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한에서 〈테제〉는 동시에 『경찰수고』에서 보여줬던 노동의 인간학등 이론적 난맥상과 혼란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서 〈테제〉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1. 포이에르 바하까지 포함한 이전의 모든 유물론의 가장 큰 오류는 사물, 현실 및 감성을 인간과 무관하게 외재하는 객관적 대상의 형태나 관조의 형태로만 오직 이해했지, 그것을 감성적 인간의 활동, 실천으로,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물론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활동적 측면은 관념론에 의해서만 추상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의 현실적이며, 감성적인 활동을 알지 못했다. 포이에르 바하는 개념적 대상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감성적 대상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대상적 행위임을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오직 이론적인 태도만을 진정한 인간의 태도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실천은 그 더러운 유태인적 현상형태로서만 파악되며,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변혁적인,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다(CW5:3).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르크스가 ‘실천’이라는 테마를 논하면서 물질적 생산인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한 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신 마르크스는 세계의 실제성을 구성하는 사물, 현실, 감각 그 자체가 관조의 대상유형이 아닌, 인간의 감성적 활동인 실천의 결과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또한 실천적 인식태도를 ‘주체적’이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주체적 실천인식을 ‘혁명적인’,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활동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간명하게 서구철학사의 주요 발전양상을 정리하는데 그것은 ‘실천철학’이라는 테마가 관념론에 의해 추상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언급이다.²⁹⁾

28) 슈크팅(Suchting)은 〈테제〉에서 개진된 마르크스의 실천에 대한 혁명적 관점전환을 이미 마르크스에게 폐기된 실천에 대한 노동중심성의 입장으로 환원하여 해석한다. W. Suchting(1979: 10f) 참조.

또한, 마르크스는 헤겔이 멈춰선 채 역사적 관념론의 신비주의 체계로 미끌어진 그 지점, 바로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문제설정과 그것의 극복지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존재의 현실성이란 그가 다양한 사회영역에 걸쳐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러한 영역에서 사회적 실천활동을 조직하는 감성적, 대상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통해 확보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활동이 인간의 삶과 더 나아가 역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대상적, 감성적인 실천양식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실천들간의 종차란 활동 자체에 내재한 성질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도 그러한 활동에서 비롯된 제 결과와 그것들간의 차이를 통해서 파악해야지 어떤 실천이 다른 실천에 비해 내재적으로 또는 선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³⁰⁾ 이것이 <테제8>이다.

§8. 모든 사회적 삶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다. 이론을 신비주의로 이끌어가는 모든 신비란 인간의 실천과 이러한 실천의 이해속에서 그것들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드러난다(CW5: 4).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정식화하면, <테제>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존하는 세계 자체가 인간의 대상적 실천활동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보다 중요하게 어떤 추상적이고 선형적 논의가 아니라 현존사회 자체의 원리와 현실로 부터 이 세계를 살아가

29) 서양철학의 전통내에서 '실천철학'이라는 테마가 갖는 위상과 함께 실천철학과 헤겔사상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글로는 M. Riedel(1983: 20ff) 참조.

30) 빌리바르는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를 통해서 오히려 생산, 즉 노동과 여타의 사회적 실천이 상호전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철학의 가장 오래된 터부의 하나인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의 근본적 구별을 마르크스가 제거"(1995: 60)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 글의 고찰결과는 이 주장과는 상반된 관점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실천을 노동의 인간학적 관점에 귀결시키는 《경철수고》식의 생산주의적, 자연주의적 유물론으로부터, <테제> 이후에는 그러한 노동 혹은 포이에시스를 인간의 사회적 실천 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키는 가운데, 근대사회내에서 그러한 노동실천이 차지하는 실제적 의미를 염밀히 분석하려 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실천을 물질적 활동인 노동에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제기된 초기의 실천관은 마르크스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지양돼야만 하는 포이에르바하적 유제인 셈이다.

는 사람들의 성격과 ‘실천’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역사적 관점이라면, 후자는 학적 관점, 또는 진정한 의미의 이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로 환원시킨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인간 각각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현실에 있어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 §7. 따라서 포이에르바하는 ‘종교적 심성’ 그 자체가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분석한 추상적 개인이 일정한 사회형태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CW5: 4).

〈테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르크스는 ‘실천’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을 통해 이후 전개될 자신의 모든 이론적 노력이 정치적 실천과 맞닿아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그의 이론적 화두는 한 가지로 집약되고 또 이를 통해 절합되는데, 그것은 마르크스의 말대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세계를 변화’ 시켜내는 것이다.³¹⁾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상적 발전의 경과를 정치이론과 경제이론등으로 분리하여 파악하거나 또는 그러한 이론적 내용을 마르크스 사상의 전기와 후기의 차이라는 식으로 통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마르크스 저작내부의 이론적 긴장과 발전의 계기라는 내적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절단하는 무익한 방식이다.³²⁾ 적어도 〈테제〉 이후의 마르크스에게는 오직 세계를 변혁하는 정치적 실천의 일환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파악과 그러한 파악으로부터 연유하는 정치이론의 산출이라는 과제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구상 전체를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정치적 독해(political reading)’라고 부르고자 한다.

31) “§11.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단지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CW5: 5)

32) 예컨대 마르크스의 이론을 오이저만(1981: 13-15)처럼 혁명적 민주주의에서 과학적 공산주의로의 발전이라든지, 굴드너(1980: 32f)와 같이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적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하는 방식 등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내재적으로 독해하는 길을 봉쇄한다. 또한 알튀세(1977: 33-38)식으로 저작자체를 청년기, 단절기, 성숙기, 완숙기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 역시 《경철수고》와 같이 동일한 저작내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긴장을 제대로 파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난점을 지닌다.

6. 결론: 마르크스의 초기 권리정치이론과 정치경제학 연구의 의의

〈테제〉 이후 마르크스의 이론적 구상은 두 가지의 주요한 구성부분을 갖는다. 하나는 부르주아 사회 그 자체의 작동원리에 대한 엄밀한 파악을 통해 그러한 사회가 지닌 내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것으로 이는 현존세계의 실정적 지위에 대한 파악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실정세계, 즉 근대부르주아 사회내부에서 비롯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혁명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다. 본고는 전자를 근대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문제설정으로 그리고 후자를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권리의 정치이론으로 주제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계기는 이러한 두 가지의 상이한 이론적 범주를 마르크스가 〈테제〉를 통해서 새롭게 정초한 실천관에 기반한 노동이론, 즉 『수고』에서 나타난 ‘노동의 인간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노동이론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동이론의 핵심은 근대부르주아 사회라는 실제성에 기반한 노동관으로, ‘노동소외’ 개념의 폐지임과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적대에 관한 인식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론의 맹아가 이미 『수고』를 통해서 노동을 인간류의 본질적 활동으로 간주하는 노동의 인간학과 긴장관계에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그것은 현존세계, 즉 사적 소유제와 자본자체가 이미 노동이라는 인류의 오랜 대상적 역사적 실천활동의 결과인바, 노동이야말로 자본과 사적소유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테제〉로서 개진됐고 『도이치이데올로기』를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노동’이라는 물질적 생산활동은 인간의 다양한 감성적, 대상적 실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정확히 사적 소유제의 완성이라 할 근대부르주아 사회야말로 노동활동에 기반한 그리고 노동활동에 인간의 모든 실천적 감성적 활동, 다시 말해 살아있는 인간자체가 종속되는 ‘역사특수’적 사회라는 인식이다.³³⁾

33) “사회적 활동이 이처럼 고정화된다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산물이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우리의 계산을 수포로 만드는 또 우리를 넘어선 물질적 강제력으로 고착화된다는 것들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CW5: 47)

마르크스에 따르면, 결국 이처럼 인간 노동의 산물이면서 사적 소유제도와 자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립화된 사물의 권리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역사적 사회구성이 바로 근대부르주아 사회를 표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설정되면 마르크스가 <태제>에서 언급한 세계변혁의 의미도 명확해진다. 다시 사물의 권리를 살아있는 인간의 권리아래 종속시키는 것, 인간의 정치적 지도가 사물의 경제적 지배를 대신하는 것, 이는 실천적으로 노동활동과 여타의 인간적 삶을 구성하는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형식적으로는 인간적 삶이라는 목적에 물질적 생산을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도이치이데올로기》를 지배한 문제의식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도이치에데올로기》에서 노동분업에 극도의 혐오를 나타내고 이러한 강제적 노동활동에 자유로운 인간적 자기활동을 대비³⁴⁾시킨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논리에서 근대부르주아 사회와 사적 소유제가 폐지된, 따라서 그의 언급대로 “노동이 폐지” (CW5: 77)된 공산주의 사회를 ‘단지’ 대비시킬 뿐이다. 마르크스가 1859년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저작은 정말이지 알뛰세가 말하는 “인식론적 단절기”의 저작이라기 보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양인의 정치적 신조를 밝히는 말그대로 “자기해명(self-clarification)”이 주요목표인 저작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근대부르주아 사회 그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세계를 변혁할 정치적 활동이 어떻게 솟아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파악의 결여와 그것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당시 실제로했던 노동자 정치운동의 전개양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의 근거가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행한 작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기의 <라인신문>에서의 활동이 그러했듯이 정치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학을 새롭게 다시 연구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와 직접적 정치활동이라는 서로 다른 두가지 실천은 향후 내적으로 긴밀히 결합되기에 이른다.

마르크스는 <라인신문>에서의 활동을 필두로 《도이치이데올로기》에 이르는 시

34)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하나의 배타적인 활동영역을 갖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그가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을 수양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회가 생산전반을 통제하게 되므로 각 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즉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소를 물며, 저녁 식사후에는 비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냥꾼으로도, 어부로도, 목동으로도, 비평가로도 되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CW5:47)

기에 독일고전철학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로 '노동의 인간학'에 기초하여 인간 일반의 소외를 파악하려 한 초기의 입장을 버리고, 근대부르주아사회라는 역사 특수적인 사회에서의 노동의 지위 및 물질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적대를 파악하는 입장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로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물질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적대는 계급간의 '권리투쟁'이라는 정치적 현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마르크스의 문제의식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지닌 의미는 그가 단지 새로운 경제학을 구축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 독해를 행한 데에 있게 되며, 『자본』을 통해 후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정치적 독해의 방식으로 이러한 권리정치의 구상을 완성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세균(1989),〈마르크스의 국가관〉,《哲學》제31집, 한국철학회.
- _____ (1992),〈국가, 대중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이론》, 여름.
- _____ (1997),〈오늘의 마르크스주의-재구성을 위한 하나의 시도〉,《이론》제17호 여름.
- 김창호(1991),《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인간관》, 죽산.
- 김홍우(1984),〈마르크시즘과 현상학〉, 이홍구 編.
- 윤형식(1993),〈마르크스의 총체적 실천으로서의 역사적 유물론〉,《이론》봄.
- 이기홍(1992),《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의 과학적 방법과 구조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 이성백(1997),〈칼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현장에서 미래를》5월, 제21호.
- 이홍구 編(1984),《마르크시즘 100년: 사상과 흐름》, 문학과 지성사.
- 임석진(1990),《헤겔의 노동의 개념》, 지식산업사.
- 정문길(1984),〈마르크스의 초기사상형성에 미친 청년헤겔파의 영향〉, 이홍구 編.
- _____ (1987),《에피고넨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 진석용(1991),《칼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사적 유물론의 형성과정과 이론구조》,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논문.
- 한국철학사상 연구회(1992),《현대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철학》, 동녘.
- Althusser, L.(1977), *For Marx*, London: NLB.
- Anderson, P.(1979), *Considerations on Western Marxism*, London: Verso.
- Arendt, H.(1996),《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우 譯, 한길사.
- Arther, C.J.(1986) *Dialectics of Labour: Marx and his Relation to Hegel*, Oxford: Basil Blackwell.
- Avineri, S.(1971)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1),《헤겔의 정치사상》, 김장권 譯, 한벗.
- Balibar, E. (1991) "From Class Struggle to Classless Struggle," in Wallerstein & Balibar, *Race, Nation, Class*, London: Verso.
- _____ (1995),《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 윤소영 譯, 문화과학사.
- Berki, R.M.(1979) "On the Nature and Origin of Marx's Concept of Labor," *Political Theory*, Vol. 7, No. 1.
- Bloch, E.(1982),〈마르크스에 따른 인간과 시민〉, in Fromm, E. (ed).
- Brie, M.(1990), *Wer ist Eigent mer im Sozialismus?* Berlin: Dietz Verlag.
- Cohen, G.A.(1978), *Karl Marx's Theory of History: A Defense*, Lond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letti, L.(1973), *Marxism and Hegel*, London: NLB.
- Conway, D.(1987) *A Farewell to Marx: An Outline and Appraisal of His Theori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 Dunayevskaya, R.(1982), 〈현대의 마르크스 휴머니즘〉, in Fromm, E(ed).
- Fedoseyev, P.N.(et als.)(1989), 《칼 마르크스 전기》, 김라합 譯, 소나무.
- Felix. D.(1983), *Marx as Politicia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Feuerbach, L.(1983a), 〈미래철학의 근본원칙〉, 강대석 譯.
- _____, (1983b), 〈철학의 개혁에 관한 예비명제〉, 강대석 譯, 《미래철학의 근본원칙외》, 이문출판사.
- Fine, R.(1995) "Hegel's Philosophy of Rights: Transitions and Emancipatory Claims in Marxian Tradition," in W. Bonefeld, R. Gunn, J. Holloway & K. Psychopedis(eds.), *Emancipating Marxism: Open Marxism Vol. III*, London: Pluto Press.
- Fromm, E(ed.)(1982), 《사회주의 인간론》, 사계절 번역실 譯, 사계절.
- Fromm, E.(1983), 〈마르크스의 인간개념〉, 김창호 譯, 《마르크스의 인간관》, 동녘.
- Gilbert, A.(1979), "Social Theory and Revolutionary Activity in Marx,"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2.
- Gouldner, A.(1980), *The Two Marxisms: Contradictions and Anomalies in the Developement of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1979), "Toward a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in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1979.
- Hardimon, M.O.(1994), *Hegel's Social Philosophy: The Project of Reconcil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äminen. S & Paldan, L.(eds.)(1984), *Rethinking Marx*, Berlin: Argument-Verlag.
- Hegel, G.W.F.(1942), *Philosophy of Right*, Oxford: The Clarendon Press.
- _____, (1977),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
- Hoffman, J.(1975), *Marxism and the Theory of Praxi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Kimmerle, H.(et al.)(1992), 《유물변증법》, 심광현, 김경수 共譯, 문예출판사.
- Korsch, K.(1986), 《마르크시즘과 철학》, 송병현 譯, 학민사.
- Kojeve, A.(1981), 《역사와 현실변증법》, 설현영 譯, 한벗.
- LEE, Dong Soo(1998), *Praxis in Temporality: The Heideggerian interpretation of Praxis*, Vanderbilt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Lukacs, G.(1971),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 (1986), 《청년해겔 1》, 김재기 譯, 동녘.
- _____, (1987), 《청년해겔 2》, 서유석, 이춘길 譯, 동녘.

- Marcuse, H.(1982), 〈사회주의 휴머니즘〉 in Fromm, E.(ed).
- _____ (1984), 《이성과 혁명: 헤겔철학의 기초》, 김현일, 윤길순 譯, 중원문화.
- Marshall, T.H.(1992),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Marshall and Bottomore,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London: Pluto Press, 1992.
- Marx, K.(1991), 《1844년의 경제학 철학초고》, 최인호 譯, 박종철 출판사.
- Marx, K & Engels, F. *Collected Works*(=CW),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cLellan, D.(1982), 《갈마르크스의 사상》, 신오현 譯, 민음사.
- Oizerman, T.I.(1981), *The Making of The Marxist Philosophy*, Moscow: Progress Publishers.
- Popitz, H.(1983), 〈사적 유물론의 철학적 기초〉, 김창호 編譯, 《마르크스의 인간관》, 동녘.
- Riedel, M.(1983), 《헤겔의 사회철학》, 황태연 譯, 한울.
- Rigby, S.H.(1987), *Marxism and History: A Critical Introduct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Ritter, J.(1983), 《헤겔과 프랑스 혁명》, 김재현 譯, 한울.
- Rotenstreich, N.(1983),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 정승현 譯, 한울.
- Schmied-Kowarzik, W.(1992), 〈사회적 실천, 자연, 그리고 변증법〉, 이부현, 이찬훈 譯, 동녘.
- Schmitt, R.(1997), *Introduction to Marx and Engels: A Critical Reconstruction*, Second Edition, Oxford: Westview Press.
- Suchting, W.(1979), "Marx's Theses on Feuerbach: A New Translation and Notes Towrads a Commentary," in John Mepham and David-Hillel Ruben(eds.), *Issues in Marxist Philosophy Volume II Materialism*, Sussex: The Harvester Press.
- Teeple, G.(1984), *Marx's Critique of Politics 1842-1847*,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Tilgher, A.(1958), *Homo Faber: Work through the Ages*,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 Vincent, J-M.(1991), *Abstract Labour: A Critique*, London: Macmillan Press.

abstract

The Forming Process of K. Marx's Political Theory
— Focused on Early Writings(1842-1845) —

Hyung-Ik Choi*

What is the essence of Marx's thoughts? This study grasps that the core of Marx's thoughts lies on the notion of the "political". This article explores the forming process of K. Marx's political theory, especially the incipient phase,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formation of Marx's thought neither by a perspective of a linear or evolutionary progression nor by a sudden epistemological break excluding a theoretical continuity between "the Young Marx" and "the Old Marx", but by the perspective of the theoretical tension and the overcoming process of it. To adopt the studying strategy of Marx's political thoughts, I attempt to elaborate two eminent theoretical turns of Marx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his political thoughts and embarking on studying the modern bourgeois political economy: 1) Marx radically changed from an early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alienation of human being based on the anthropology of labour to a mature perspective to grasp both meaning of labour and social antagonism in historically specific and concrete modern bourgeois society, not in history or society in general. 2) Marx realized that such a

*Senior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SNU

Research Area: Political theory, Political Economy, Political Sociology

Major Publications: "Neo-Liberalism and Social Democracy"

"A Study of Contemporary German Politics"

"Karl Marx's Political Theory of Rights"

"Capitalism and Social Democracy" (translated)

Tel: 880-6343/6314, 018-228-4174(PCS)

E-mail: cooler@hanmail.com

social antagonism could not help the appearance of conflicts between the rights of social classes. In case of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Marx's theoretical turns as such, the significance of the criticism of political economy of Marx lies not on constructing a new economic theory, but on practicing a political reading against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system itself.